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001700

소셜 데이팅 앱 서비스 가입 시 성별 및 학별을 이유로 한 차별

진 정 인 ○○○

피진정인 (주)△△△△△△△△ 대표이사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과 학별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합니다.

이 유

I.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주)△△△△△△△△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는 소셜 데이팅

앱 '□□□□□'(이하 '이 사건 데이팅 앱'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조건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 학력(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한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한

이 사건 데이팅 앱은 ◇◇대학교 졸업생이 설립한 후 ◇◇대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소셜 데이팅 서비스였으나, 현재는 130여 개 이상의 학교와 직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가입방식은 남성회원의 경우 일정 범위의 학교 또는 직장을 인증하여야 하고, 여성회원의 경우 가입 제한은 없으나 대학(원), 직장, 연봉 등에 관한 정보를 자기소개에 등재하고자 하면 이를 인증받아야 한다.

이 사건 데이팅 앱이 남성과 여성의 가입조건을 달리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앱 서비스 이용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선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제 또는 결혼할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직업이나 출신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대상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선호'에 기반한 구분이 인종,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데이팅 앱은 2015. 5. 29. 설립되었고, 직원 수 22명, 연간 매출 규모 80억 원 수준이다. 이 사건 데이팅 앱은 ◇◇대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웹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130여 개의 학교 및 직업군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데이팅 앱은 성별에 따라 가입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안정된 회사 재직자(대기업, 공기업 등) △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 △ 명문대학 재학·졸업자 등 특정한 직업과 출신학교 조건에 대해 인증절차를 거친 후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가입 제한은 없으나 대학(원), 직장, 연봉 등에 관한 정보를 자기소개란에 등재하고자 하면 이를 인증받아야 한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한 달 동안 데이팅 앱 서비스를 이용한 성별 이용자 수를 보면, 주요 데이팅 앱 이용자의 성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8배 정도 많은 편이며, 이 사건 데이팅 앱의 경우 남성이 3.5배 가량 많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인종, 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데이팅 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남성은 여성과 달리 특정한 자격(학교, 직장, 전문직 여부)을 인증해야 하고,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성은 이용할 수 없는 등 성별, 학력(학벌)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서비스 등 재화·용역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조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데이팅 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가입이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피진정인의 영업상 전략에 해당하는 것으로, 앱 사용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 데이팅 앱이 성별에 따라 회원 가입 요건을 달리 정하고,

남성의 경우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군으로 가입요건을 정해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데이팅 앱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 점, 가입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II. 의견표명

이 사건 데이팅 앱에서 남녀의 선호조건은 주관적인 취향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입조건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남성은 여성과 달리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 등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면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 사회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이 사건 데이팅 앱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고, 회원의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이 안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학교 졸업이나 직업 등을

제한하여 인증을 거치도록 한 것이 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별, 특정 학교 졸업이나 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24.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이 준 일

위 원 김 수 정